

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[ 승인신청서 ] 승인서							처리기간	
							5일	
신청인 (반입자)	① 성명(대표자)			② 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	
	③ 상호(법인명)			④ 전화번호				
	⑤ 주소(본점 소재지)							
	⑥ 반입 또는 설치 장소			⑦ 사업자 등록번호				
신 청 내 용								
⑧ 종류호별	⑨ 품명	⑩ 수량	⑪ 규격	⑫ 단가	⑬ 가격	⑭ 과세표준	⑮ 세율	⑯ 세액
반출자	⑰ 성명 또는 상호(법인명)							
	⑱ 주소 또는 제조장 소재지							
⑲ 반입 사유								
⑳ 반입 연월일		년 월 일						
㉑ 폐기 사유								
㉒ 그 밖의 사항								
위의 물품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폐기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                </div> 세무서장 귀하								
제 호 위와 같이 면세물품의 폐기를 승인합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세무서장 [인]                 </div> 귀하								
구비서류: 없음							수수료	
※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.							없음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